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고,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특허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보호협력국·산업재산정보국·상표디자인심사국·특허심사기획국·디지털융합심사국·전기통신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 및 기계금속심사국”을 “운영지원과·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보호협력국·산업재산정보국·상표디자인심사국·특허심사기획국·디지털융합심사국·전기통신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35조를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2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기술(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설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반도체 조립공정 및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별표 1 중 총계 “1,596”을 “1,580”로, 일반직 계 “1,594”를 “1,578”로, 3급

또는 4급 이하 “1,578”을 “1,562”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제34조제1항 관련)

업무	정원
1. 삭제	
2. 특허 심사업무	14명
3.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9명
4. 특허 심사업무	13명
5. 특허 심사업무	7명
6.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5명
7. 특허 심사업무	4명
8.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3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특허청에 <u>운영지원과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산업재산정보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디지털융합심사국 · 전기통신심사국 · 화학생명심사국 및 기계금속심사국</u> 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u>운영지원과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산업재산정보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디지털융합심사국 · 전기통신심사국 · 화학생명심사국 ·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소관사무의 일시조정) <u>청장은 특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 · 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 · 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u>	제18조의3(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 ----- ----- -----.
제35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특허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u>반도체심사추진단</u> 을 둔다.	제18조의2(반도체심사추진단) ① <u>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u>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한다.

③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에 특허청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596</u>		<u>1,580</u>	-16	
	.		.		.		
	.		.		.		
일반직	계		<u>1,594</u>		<u>1,578</u>	-16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78</u>		<u>1,562</u>	-1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3